

2009. 10. 20.

조례안 심사 보고서

-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전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10.6.	2009. 10.6.	2009. 10.13	2009. 10.13	교통과장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10.6.	2009. 10.6.	2009. 10.13	2009. 10.13	산림녹지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②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연휴양림의 단체숙소 신축에 따라 신축된 단체숙소의 시설 사용료 정하고 전화예약제 폐지로 투명성을 확보하며, 휴무일 폐지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부제 운행 참여 차량에 인센티브 부여(안 제3조 제7항)
- 나. 풍물시장 개장일에 한하여 교현천 및 충의공영주차장 무료운영
(안 제6조의2 제2항)
- 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함
(안 제11조의2)
- 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안 별표2 제6호)

[2]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시설물 신축에 따른 사용료 변경 (안 제5조 별표 1)
- 나. 전화예약제 폐지로 투명성 확보 (안 제7조)
- 다. 휴무일 폐지(안 제1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경감과
풍물시장 개장일에 교현천, 충의공영주차장의 무료 운영 및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제7항의

“승용차 부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시민들에게 승용차 부제 운행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부제 운휴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차요금의 감면만을 위해 부제운행스티커를 발부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행상 다소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제6조2 제2항의

“교현천 공영주차장과 충의공영주차장을 풍물시장 개장일에 무료로 운영”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율을 증대시켜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신설되는 조례안 제11조의2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례로 위임되기 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와 관련한 별표2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기의 조례안 제11조의2와 별표2의 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②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번 개정 조례안은

휴양림의 단체숙소 신설에 따라 그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예약방법 변경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별표1의

“시설사용 요금의 변경은”

계명산휴양림의 25인용 단체숙소 신축($172m^2$ 이상, 1동)에 따라 사용료를 새로이 정하고 향후 숙박시설의 신·증축을 대비하여 시설규모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요금 및 규모의 구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제2조 및 제7조의

“시설 예약시 전화예약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예약만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휴양림 예약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을 경우 예약시 주민번호 입력 등으로 신분확인이 용이하여 시설물 훼손 및 비치물품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변상 등을 위한 조치가 용이할 뿐 아니라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인터넷 사용에 취약한 시민들은 시설 예약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시설이용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4조는

매주 목요일의 휴무일을 폐지함으로써

특정 일자에 구애 받지 않고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부제운행차량 스티커 발급은 누구가 하나?

답변 : 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도 발급할 계획임

(2) 질의 : 부제운행차량에 대한 확인은? 단속은?

답변 : 없음.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 차원임

(3) 질의 :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용의는?

답변 : 검토하겠음.

(4) 질의 : 금릉공영주차장을 6시부터 무료개방 할 용의는?

답변 : 검토하겠음.

②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시설규모를 변경한 이유는?

답변 : 신·증축에 대비함

(2) 질의 : 101m² 이상 시설은?

답변 : 이번에 신축된 25인승 1동뿐임

(3) 질의 : 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익 관계는?

답변 : 수익이 나오고 있음.

- (4) 질의 : 문성휴양림은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이 부족한데?
답변 :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 설치를 검토중임.

6. 심사결과

-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2]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